

#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2
----------	------

제출연월일: 2019. 9. 6.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 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금 상한액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500만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 나.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통하여 발굴된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17조의 규정과 일치시켰으며
- 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활동을 지원하여 포획률을 높이고,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위해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 울주군 : 실탄, 수렵보험료 등 지원

## 2. 주요내용

- 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3조)
- 나. 야생동물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현장확인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4조), (안 별지 제1호서식)
- 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7조)
- 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정밀조사서 피해지역 동장 보고자란 삭제(안 별지 제2호서식)

### 3. 근거법규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1조의3

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 제15조, 제17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 없음(붙임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라. 입법예고: '19. 6. 10. ~ 7. 23.(23일),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12호

##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을 “중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피해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시행규칙)을 삭제한다.

제7조(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방지단에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수렵보험료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별지 제1호서식 중 “중구 동장 귀하”를 “중구청장 귀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피해지역 동장 울산광역시 중구 동장(직인)”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농업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	피해지역	울산광역시 중구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농지원부 또는 경작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b>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정밀조사서</b>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성 명			토지소유자와 관계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소재지					
	경작지면적	m <sup>2</sup>		가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대상작물	생육단계	피해면적(m <sup>2</sup> )	피해율(%)	피해환산면적(m <sup>2</sup> )
	지번	지목				
	합 계					
	비 고	피해환산면적(m <sup>2</sup> )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				
그 밖의 사항	총 피해면적 100m <sup>2</sup> 이상 해당여부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 해당여부					
	농외소득 50% 미만 여부					
「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b>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b>						
작성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근경/원경)						



현행	개정안
<p><u>보고하여야 한다.</u></p>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lt;신설&gt;</u></p>	<p><u>&lt;삭제&gt;</u></p> <p>제7조(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① <u>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② <u>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방지단에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u>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u></li><li><u>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수렵보험료</u></li><li><u>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u></li></ol>

## 근거법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2.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23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 법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들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1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

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29>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농업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	피해지역	울산광역시 중구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농지원부 또는 경작확인서)

현행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2.29>

<b>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정밀조사서</b>							
피해농업인 (경작자)	주 소						
	성 명		토지소유자와 관계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소재지						
	경작지면적 m <sup>2</sup>		가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대상작물	생육단계	피해면적(m <sup>2</sup> )	피해율(%)	피해환산면적(m <sup>2</sup> )
	지번	지목					
	합 계						
비 고		피해환산면적(m <sup>2</sup> ) : 피해면적×피해율(%) 피해액 : 피해환산면적×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상금 : 피해액×산정율(40~80%)					
그 밖의 사항		총 피해면적 100m <sup>2</sup> 이상 해당여부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 해당여부					
		농외소득 50% 미만 여부					
「울산광역시 중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동장		울산광역시 중구		동장 (직인)			
<b>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b>							
작성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첨부(근경/원경)							

<b>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2019A울산중구024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환경위생과	
	담당자명	이다겸	전화번호 052-290-371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6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위생과)	본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b>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상한액 상향조정,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현장확인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조항 신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정밀조사서 피해지역 동장 보고자란을 삭제하는 것임.</b>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6월 18일  <b>울산광역시중구성별영향평가책임관</b> (담당자/연락번호 : 류지숙/052-290-4903)  환경위생과장 귀하			

##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권고된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되는 부분 및 자치법규 개선사항 반영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 그 개정 내용이 조문의 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선언적 형식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3. 작성자

- 소 속 : 환경위생과
- 직 책 : 환경관리계장
- 이 름 : 구 희 철
- 연락처 : 290-3711